

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3.20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김석진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허 욱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9차, 제11차 및 제1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10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10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] 의결사항

가.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9-14-057~071)

- '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'에 대해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이동통신 3사의 '18.4.1.~8.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,
 -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,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억 5천1백만원(SKT 9.75억원, KT 8.51억원, LGU+ 10.25억원)을 부과하고,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120만원~2,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- ※ 고가요금제 부당 가입판매의 위반행위 정도(위반 유통점수 등)와 관련하여 “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”(제1안)와 “경미한 위반행위”(제2안)에 대한 논의결과, 제1안에 3인이 찬성하고 제2안에 2인이 찬성하여 제1안으로 결정

나. (주)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(2019-14-072)

- '(주)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'에 대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 - (주)삼라가 신청한 (주)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,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제고,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- * 다만, (주)울산방송의 (주)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지,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(현재 10조원)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협약서 제출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

다. 「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9-14-073)

- '「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해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 -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

낮은 항목 삭제, 유사항목 통합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「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8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최선경 편성 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「방송법 시행령」 개정(‘18.12.24. 공포, ‘19.6.25. 시행)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‘중편PP’)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*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*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중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30%이상 설정
- 중편PP의 주시청시간대(평일 : 19시~23시, 주말·공휴일 : 18시~23시)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10%이상 설정

9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6)